

# 『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 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 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 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 대면  
회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, 시민건강위원회의  
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 
회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  
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, 위원회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.
  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 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 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 
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  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